

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·운영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최재욱 의원 외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9년 4월 15일
- 회부일자 : 2009년 4월 16일

3. 제안이유

- 현재 이원화되어 운영하고 있는 「청소년상담지원센터」와 「청소년 활동진흥센터」를 통합하여 청소년상담과 활동진흥 업무를 체계화 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통합센터의 명칭은 ‘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’라 함(안 제3조)
- 기능은 「청소년기본법시행령」과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, 긴급구조, 활동·진흥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함(안 제4조)
- 센터에는 원장과 복지상담실, 활동진흥실을 둠(안 제5조)

- 센터의 원장은 청소년 건전육성 및 상담·지도 등에 능력과 자질을 갖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용하고,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할 수 있음(안 제 8조)
- 재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충당함.(안 제16조)
 - ※ 조례안 : 5장 21조 부칙1조로 구성

5. 검토의견

가. 제정 동기

- 동 조례안은 「청소년기본법」과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므로써
- 청소년상담과 활동진흥 업무를 체계화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통합운영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임

나. 현재 운영 실태

- 충청북도에서는 상담지원센터는 1991년, 활동진흥센터는 1997년에 설치하여 「청소년기본법」과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에 따라 각각 별도의 조직으로 도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,
 - 2008년 1월부터 상담지원센터소장이 활동진흥센터소장을 겸직 근무토록 하고 있음
- ※ 타 시도 : 통합 6개소(법인운영), 미통합 9개소(단체위탁)

다. 검토결과

- 동 조례안은 센터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청소년상담 지원센터와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통합 운영하고,
- 청소년상담과 활동진흥 업무를 연계한 통합관리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,
- 향후 관련단체 위탁 또는 법인설립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
붙임 :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·운영조례안. 1부.